

#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처 연구진흥팀

# CONTENTS



Chapter 01 연구윤리 위원회

Chapter 02 생명윤리위원회

- 설립근거 및 역할
- 심의대상
- 신청방법

Chapter 0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설립근거 및 역할
- 신청방법

Chapter 04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Chapter

01

연구윤리 위원회

## 연구 개시 전, 연구계획에 대한 사전심의위원회

### 생명윤리위원회 (IRB)

-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 인간의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

- 우리대학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서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동물보호법/농림축산검역본부)

## 연구 진행 과정, 또는 이후 결과물 등의 사후심의위원회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등)

Chapter

02

생명운리위원회

## 생명윤리위원회 설립 근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서 행해지는 **인간대상 연구**를 비롯한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 인간(연구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운영.

## 생명윤리위원회 역할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법 제10조 3항 1호)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 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
- 승인 이후, 수행중인 연구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법 제10조제3항제2호)
- 그밖에 교내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 연구자 윤리지침 마련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대상

### ● 인간대상 연구

- ①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임상시험, 식품 섭취, 운동 등)
- ②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녹화관찰 등을 통한 연구)
- ③ 연구대상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병원등록번호 수집)

### ●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적용 연구에 해당)

연구	연구내용	연구대상	생명윤리법 적용 여부
휴대폰 전자파 수치 실험	다양한 휴대폰의 전자파 수치를 비교한 실험	휴대폰	미적용
휴대폰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실험(동물실험)	흰쥐를 대상으로 휴대폰 전자파가 흰쥐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	동물(흰쥐)	미적용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실험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여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간(연구대상자)	적용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임상 실험결과를 토대로 한 2차 연구	인간(개인정보, 임상정보 등)	적용
소득계층별 휴대폰 사용실태와 그에 따른 전자파 수치에 관한 연구	모집단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대인접촉 등을 통해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기 연구된 휴대폰별 전자파 수치와 비교하여 연구	인간(소득계층별 모집단)	적용
휴대폰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흰쥐의 유전자 변형 여부연구	흰쥐를 휴대폰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시킨 후 유전자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동물유래물 (흰쥐유전자)	미적용
휴대폰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의 유전자 변형 여부연구	휴대폰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연구대상자)를 선정, 직접 혈액 등을 채취하여 유전자를 분석하는 연구	인체유래물 (유전자)	적용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 방법 / irb.sookmyung.ac.kr

## ● 심의 신청 주의사항

- ▶ 반드시 연구 수행 전에 심의 및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연구 개시 이후 심의 불가).
- ▶ 신규 접수마감일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이며 월 1회 심의가 개최되므로 관련 연구 수행 최소 2개월 전에는 IRB 심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심의 신청 방법

<p>IRB 신청 이전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B 심의사이트 가입, IRB 교육 이수 (발급일로 부터 2년간 유효함)</li> <li>▪ IRB 심의신청서와 제반 서류 구비 (해당 학과에서 논문 계획서 심의를 통과한 이후의 최종 논문 계획서 등)</li> </ul> <p>※ 심의를 신청한 자는 IRB에서 공식적인 승인을 얻을 때까지 연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함</p>
<p>IRB 신청 접수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 서류를 지도 교수에게 제출하여 최종 점검 (지도교수 서약서 필수 제출)</li> <li>▪ IRB사이트에 심의신청 서류를 제출 (접수마감일 : 매월 둘째주 화요일)</li> </ul>
<p>IRB 정규 심의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심의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 정기회의)</li> <li>▪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 : 승인, 조건부승인, 보완후재심의, 보류, 반려 등</li> </ul> <p>서류 보완 필요 시, 연구자에게 보완 사항 통지 후 재심의 진행</p>
<p>승인 후 연구 진행 및 종료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 받은 IRB 연구유효기간에 맞추어 연구 수행</li> <li>▪ 이미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변경심의 신청'을 해야 함</li> </ul> <p>▪ 연구종료 후 종료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IRB 완료</p>

Chapter

0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립 근거

- 「동물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실험 및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역할

- **동물실험**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20조)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통증의 정도 등
- 승인 이후, 수행중인 연구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법 제55조1항)
- 그 밖에 교내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 및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신청 방법 / iacuc.sookmyung.ac.kr

## ● 심의 신청 주의사항

- ▶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반드시 사전에 심의 및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신규 접수마감일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며 월 1회 심의가 개최되므로 관련 연구 수행 최소 1개월 전에는 IACUC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심의 신청 방법

IACUC 신청 이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CUC 심의 사이트 가입, IACUC 교육 이수 (발급일로 부터 2년간 유효함)</li> <li>▪ IACUC 심의신청서와 제반 서류 구비</li> </ul> <p>※ 심의를 신청한 자는 IACUC에서 공식적인 승인을 얻을 때까지 연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함</p>
IACUC 신청 접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CUC사이트에 심의신청 서류를 제출 (접수 마감일 : 매월 셋째 주 목요일)</li> </ul>
IACUC 정규 심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심의 (월 1회)</li> <li>▪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 : 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 보류, 반려 등</li> </ul> <p>서류 보완 필요 시, 연구자에게 보완 사항 통지 후 재심의 진행</p>
승인 후 연구 진행 및 종료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 받은 IACUC 연구유효기간에 맞추어 연구 수행</li> <li>▪ 이미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변경심의 신청'을 해야 함</li> <li>▪ 연구종료 후 종료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li> </ul>

Chapter

04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연구진실성의 개념 및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 규정」(2024. 6.) 제정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연구의 계획, 제안, 수행, 보고, 평가 등)에서 알고 실천해야 할 가치나 규범으로, **연구진실성 확보,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충돌 관리, 인간·동물 대상 연구윤리, 건전한 연구실 조성** 등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 활동을 수행할 책무를 지님.  
 ※ 관련 핵심 내용은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리플렛 참고(별첨)
- 교육부훈령 제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항
-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4조(정의) 제1항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기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b>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b>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b>인위적으로 조작</b> 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b>임의로 변형·삭제함</b> 으로써 <b>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b> 하는 행위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b>적절한 출처표시 없이</b> 활용함으로써, <b>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b>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b>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b> ,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b>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b>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b>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b>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b>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b>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감사합니다.